

|        |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 | 2200038      |
| 의 퇴 인  | 박찬대의원        |
| 회 답 일  | 2024. 6. 11. |
| 추 계 번호 | 24D0334      |

#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## I. 비용추계 결과

- 제정안에 따른 특별검사 등의 임명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추가재정소요는 1년간 총 75억 9,600만원(단년도 소요)으로 추계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년

(단위: 백만원)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2025년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|
| 특별검사의 임명 (안 제3조제4항),<br>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(안 제6조제4항),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(안 제7조), 수사기간 등(안 제9조), 재판기간 등(안 제10조), 보수 등(안 제13조) | 인건비 | 1,932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운영비 | 4,786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시설비 | 878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합계  | 7,596 |

주: 본 추계는 특별검사의 직무수행 시점을 2025년 초로 가정하여 2025년 내에 수사와 공소기간이 종료된다고 가정하였고, 특별수사관 및 파견인원을 제정안에 규정된 최대 인원으로 가정한 것으로, 실제 제정안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본 추계와 달라질 수 있음

## II. 재정수반요인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1  | 안 제3조제4항(특별검사의 임명)         | 대통령은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 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| 2  | 안 제6조제4항(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) | 특별검사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20명 이내의 파견검사, 40명 이내의 파견공무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량규정 |
| 3  | 안 제7조(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)        | -특별검사는 특별검사보 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할 수 있고, 대통령은 3일 이내에 3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함(제1항)       | 의무규정 |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(제3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량규정 |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특별검사는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한 경우에는 특별검사보, 특별수사관 등 특별검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원을 최소한도의 범위로 유지하여야 함(제6항) | 의무규정 |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|
|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4  | 안 제9조(수사기간 등)  | -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음(제1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량규정 |
|    |                | -특별검사는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(제2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|    |                | -특별검사는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(제3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량규정 |
| 5  | 안 제10조(재판기간 등) |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3개월 이내,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선고하여야 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| 6  | 안 제13조(보수 등)   | -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고등검사장의 예에 준함<br>-특별검사보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장의 예에 준함<br>-특별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3급부터 5급까지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의 예에 준하고, 특별검사의 퇴직시까지 특별검사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함 | 의무규정 |

### 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#### 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| 추계여부 | 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|
| 1  | 안 제3조제4항(특별검사의 임명)         | ○    |                |
| 2  | 안 제6조제4항(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) | ○    |                |
| 3  | 안 제7조(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)        | ○    |                |
| 4  | 안 제9조(수사기간 등)              | ○    |                |
| 5  | 안 제10조(재판기간 등)             | ○    |                |
| 6  | 안 제13조(보수 등)               | ○    |                |

## 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특별검사 등의 임명 및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인건비, 운영비 및 시설비로 나뉘고, 운영규모가 수사기간과 기소 후 공소유지기간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구분하여 추계
- 특별검사 등의 운영비는 「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「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」이라 함)에 따른 고 이예람 중사 특검에 소요된 경비를 참고
  - 제정안의 경우 「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」에 따른 특별검사 등의 처우 및 활동기간 등이 아래의 표와 같이 유사함

[표 2] 제정안과 고 이예람중사 특검법 비교

| 구 분                | 제정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특별검사 등의 대우 및 보수 수준 | 특별검사: 고등검사장 수준<br>특별검사보: 검사장 수준<br>특별수사관: 3급~5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 수준 | 좌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 인원   | 특별검사보: 최대 3명<br>특별수사관: 최대 40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특별검사보: 최대 4명<br>특별수사관: 최대 40명 |
| 파견검사 및 파견공무원의 수    | 파견검사: 최대 20명<br>파견공무원: 최대 40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파견검사: 최대 10명<br>파견공무원: 최대 30명 |
| 수사기간               | 120일 이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20일 이내                       |
| 공소유지기간             | 7개월 이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2개월 이내                       |

- 「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」에 따른 수사기간은 4개월, 2022년 공소유지기간은 3.5개월이고, 2024년 6월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특별검사가 계속 직무를 수행 중임
- 수사기간에 특별검사보는 3명, 특별수사관은 3급 수사관이 40명 임명되는 것으로 가정하고, 공소유지기간에 직무를 수행하는 인원 및 직급 구성은 「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」에 따른 특별검사 사례를 준용
  - 실제 운영과정에서는 특별수사관을 정원의 일부만 임명하고, 기타직을 수사인력 보조 등을 위하여 추가 채용하여 운용<sup>1)</sup>하고 있으나, 현 시점에서

제정안에 따라 임명될 특별수사관과 기타직 수 등을 추정하기 어려우므로, 수사기간에 기타직 없이 모두 특별수사관(3급)을 정원에 따른 최대인원(40명)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가정

- 공소유지기간에 유지하는 인원은 ‘고 이예람 중사 특검’의 공소유지기간 활동인원의 인원 수와 구성<sup>2)</sup>을 참고하되, 기타직은 특별수사관(3급)으로 임명한다고 가정하여 추계에 반영함

#### □ 파견인원은 최대인원인 60명으로 가정

- 제정안은 특별검사로 하여금 관계기관으로부터 검사는 20명 이내, 공무원 40명 이내에서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, 수사기간에 최대인원인 검사 20명, 공무원 40명을 파견한다고 가정하고 추계
- 파견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<sup>3)</sup>

#### □ 제정안에 따른 특별검사의 경비 등에 대한 단가는 「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」에 따른 경비집행내역<sup>4)</sup>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<sup>5)</sup> 및 소비자물가상승률<sup>6)</sup>을 반영하여 산정함

- 특별검사의 퇴직시까지 지급하는 직무수행경비는 운영비에 포함되는 것으

- 1) ‘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’의 경우 파견검사 특별수사관 정원은 최대 40명이나, 실제 수사기간이 임명한 특별수사관은 5명이고, 기타직 18명을 채용하였음  
 2) 특별검사 1명, 특별검사보 2명, 특별수사관 6명, 기타직 3명(자료: 법무부)  
 3) 파견인원의 인건비는 「공무원 보수규정」에 따라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  
 4) 고 이예람 중사 특검 관련 경비 집행 내역: 2022년

(단위: 백만원)

|                        | 수사기간<br>(2022. 5. 16. ~ 2022. 9. 12.) | 공소유지기간<br>(2022. 9. 13. ~ 2022.12.31.)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직무활동 운영비 <sup>1)</sup> | 2,27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2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시설비 <sup>2)</sup>      | 39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5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- 주: 1. 수사기간 활동인원은 총 63명(특별검사 1명, 특별검사보 3명, 특별수사관 5명, 기타직 18명, 파견인력 36명)이었으며, 공소유지기간 활동인원은 12명(특별검사 1명, 특별검사보 2명, 특별수사관 6명, 기타직 3명)임  
 2. 시설비는 사무실 리모델링에 따른 공사비 등  
 3. 공소유지기간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으므로, 2022년 9월 13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요된 경비만을 집계하여 공소유지기간 경비 집행내역을 산정함

자료: 법무부

#### 5) 공무원임금평균상승률 (2024. 4. 경제전망 기준)

| 구분       | 2023 | 2024 | 2025 | 2026 | 2027 | 2028 | 2029 |
|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공무원임금상승률 | 1.7% | 2.5% | 1.9% | 1.9% | 1.9% | 1.9% | 1.9% |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#### 6) 소비자물가상승률(2024. 4. 경제전망 기준)

| 구분       | 2023 | 2024 | 2025 | 2026 | 2027 | 2028 | 2029 |
|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소비자물가상승률 | 3.6% | 2.6% | 2.2% | 2.2% | 2.1% | 2.1% | 2.1% |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로 가정

- 「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」에 따른 수사기간은 4개월(2022. 5. 16.~ 2022. 9. 12.)이고, 2024년 6월 현재 재판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운영비와 시설비는 2022년 수사기간(4개월) 및 공소유지기간(3.5개월, 2022. 9. 13~ 2022. 12. 31.) 지출된 비용을 반영하여 추계

□ 수사기간은 120일, 공소유지기간은 7개월로 가정

- 현 시점에서 실제 수사기간 및 공소유지기간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제정안에 따른 수사기간 및 공소유지기간은 각각 최장 기간(120일, 7개월)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

□ 제정안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규정하고 있으나, 법안 심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(단년도)으로 함

### 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#### 가. 인건비

- 수사기간(120일) 및 공소유지기간(7개월) 동안 소요되는 특별검사 등의 인건비는 ‘고 이예람 중사 특검’ 당시 지급된 2022년 기준 보수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공무원 임금상승률을 반영하여 추계

[표 3] 고 이예람 중사 특검 당시 지급 보수(2022년 기준)

(단위: 원)

| 직급        | 월 평균 보수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|
| 특별검사      | 10,978,000 |
| 특별검사보     | 9,611,360  |
| 특별수사관(3급) | 6,505,760  |

자료: 법무부

-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을 적용한 월 보수에 2025년 수사기간(120일) 및 공소유지기간(7개월)에 해당하는 인건비 소요액은 다음의 표와 같음

[표 4] 수사기간 동안 소요되는 특별검사 등의 인건비 추정: 2025년

| 구분        | 1인당 월 보수<br>(A, 백만원) | 인원(B, 명) | 기간(C, 개월) | 재정소요(D)<br>(=A×B×C, 백만원)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특별검사      | 11.6                 | 1        | 4         | 46.4                     |
| 특별검사보     | 10.2                 | 3        | 4         | 122.4                    |
| 특별수사관(3급) | 6.9                  | 40       | 4         | 1,104                    |
| 합계        | —                    | 44       | —         | 1,272.8                  |

자료: 법무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[표 5] 공소유지기간 동안 소요되는 특별검사 등의 인건비 추정: 2025년

| 구분        | 1인당 월 보수<br>(A, 백만원) | 인원(B, 명) | 기간(C, 개월) | 재정소요<br>(D=A×B×C, 백만원)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특별검사      | 11.6                 | 1        | 7         | 81.2                   |
| 특별검사보     | 10.2                 | 2        | 7         | 142.8                  |
| 특별수사관(3급) | 6.9                  | 9        | 7         | 434.7                  |
| 합계        | —                    | 12       | —         | 658.7                  |

자료: 법무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□ 수사기간 및 공소유지기간 동안 소요되는 인건비의 총액은 19억 3,200만원으로 추계

[표 6] 수사기간 및 공소유지기간 소요되는 인건비 추정: 2025년

(단위: 백만원)

| 구분  | 수사기간  | 공소유지기간 | 합계    |
|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|
| 인건비 | 1,273 | 659    | 1,932 |

주: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

## 나. 운영비

□ 특별검사 등의 운영비는 ‘고 이예람 중사 특검’ 당시 소요된 운영비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추계

□ 수사기간 운영비는 총 40억 8,096만원으로 추계

- ‘고 이예람 중사 특검’ 수사기간(4개월) 직무활동 운영비 1명당 단가<sup>7)</sup>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수사기간 활동인원 수<sup>8)</sup>를 적용하면, 4개월의 수사기간의 직무활동 운영비(2025년) 총액은 40억

7) 수사기간 동안의 직무활동운영비(22억 7,500만원)를 개월 수(4개월)와 활동인원(63명)으로 나누어 산출

8) 총 104명(특별검사 1명, 특별검사보 3명, 특별수사관 40명, 파견인력 60명)

8,096만원

□ 공소유지기간 운영비는 총 7억 476만원으로 추계

- ‘고 이예람 중사 특검’ 2022년 공소유지기간(3.5개월) 직무활동 운영비 1명당 단가<sup>9)</sup>에 소비자물가상승률과 공소유지기간 동안의 활동인원 수<sup>10)</sup>를 적용하면 7개월의 공소유지기간의 직무활동 운영비(2025년) 총액은 7억 476만원

□ 수사기간 및 공소유지기간 동안 소요되는 운영비 총합은 47억 8,600만원

[표 7] 제정안에 따른 운영비 추정: 2025년

(단위: 월, 명, 백만원)

| 구분  |        | 1인당 재정소요<br>(A, 백만원) | 인원(B, 명) | 기간(C, 월) | 재정소요(D)<br>(=A×B×C,<br>백만원) |
|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운영비 | 수사기간   | 9.8                  | 104      | 4        | 4,081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공소유지기간 | 8.4                  | 12       | 7        | 705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합계  |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| -        | 4,786                       |

주: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

자료: 법무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## 다. 시설비

□ 시설비는 ‘고 이예람 중사 특검’ 당시 소요된 시설비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추계

□ 수사기간 시설비는 7억 1,136만원으로 추계

- ‘고 이예람 중사 특검’ 수사기간에 사용한 시설비 1인당 단가<sup>11)</sup>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수사기간 활동인원 수<sup>12)</sup>를 적용한 2025년 수사기간 시설비는 7억 1,136만원임

□ 공소유지기간 시설비는 1억 6,716만원으로 추계

- ‘고 이예람 중사 특검’ 공소유지기간에 사용한 시설비 1인당 단가<sup>13)</sup>에 국

9) 공소유지기간 동안의 직무활동운영비(3억 2,400만원)를 개월 수(3.5개월)와 활동인원(12명)으로 나누어 산출

10) 총 12명(특별검사 1명, 특별검사보 3명, 특별수사관 9명)

11) 수사기간 동안의 시설비(3억 9,600만원)를 활동인원(63명)으로 나누어 산출

12) 총 104명(특별검사 1명, 특별검사보 3명, 특별수사관 40명, 파견인력 60명)

13) 공소유지기간 동안의 시설비(1억 5,400만원)를 활동인원(12명)으로 나누어 산출

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과 공소유지기간 활동인원 수<sup>14)</sup>를 적용한 2025년 공소유지기간 시설비는 1억 6,716만원임

□ 시설비 총액은 다음의 표와 같이 8억 7,800만원으로 추정됨

[표 8] 제정안에 따른 시설비 추정: 2025년

(단위: 명, 백만원)

| 구분  |        | 1인당 재정소요<br>(A, 백만원) | 인원(B, 명) | 재정소요(C)<br>(=A×B, 백만원) |
|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시설비 | 수사기간   | 6.8                  | 104      | 711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공소유지기간 | 13.9                 | 12       | 167                    |
| 합계  |        | —                    | —        | 878                    |

주: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
자료: 법무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## IV. 부대의견

□ 본 추계는 특별검사의 직무수행 시점을 2025년 초로 가정하여 2025년 내에 수사와 공소기간이 종료된다고 가정하였고, 특별수사관 및 파견인원을 제정안에 규정된 최대 인원으로 가정한 것으로, 실제 제정안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본 추계와 달라질 수 있음

## V. 작성자

□ 성명

|         |     |     |
|---------|-----|-----|
| 국회예산정책처 | 분석관 | 과장  |
| 행정비용추계과 | 한예슬 | 김안나 |

□ 대표연락처

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성명  | 전화번호         | 이메일 주소               |
| 한예슬 | 02-6788-4831 | yeseulhan@nabo.go.kr |

14) 총 12명(특별검사 1명, 특별검사보 3명, 특별수사관 9명)